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07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김예지 · 강대식 · 유용원
최수진 · 정성국 · 송석준
안철수 · 김대식 · 강승규
박덕흠 · 백종현 · 김소희
신성범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 · 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

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4.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5.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
6.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을 유지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략)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u>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 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u> <u>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 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u> <u>3.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 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u>

<u><신 설></u>	<u>4.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u>
	<u>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u>
	<u>연립주택은 제외한다)</u>
<u><신 설></u>	<u>5.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u>
	<u>물류·냉동 창고</u>
<u><신 설></u>	<u>6.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u>
	<u>의 창고</u>
<u><신 설></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